특 허 법 원

제 5 - 3 부

판 결

사 건 2022허2110 등록무효(특)

원 고 주식회사 A

대표이사 B

소송대리인 변리사 홍기웅

피 고 C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수진

변론종결 2022. 10. 20.

판 결 선 고 2022. 11. 24.

주 문

-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특허심판원이 2022. 2. 9. 2021당180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

- 1) 발명의 명칭: 카시트용 발받침
-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2013. 10. 31./ 2014. 5. 21./ 특허 제1399896호
- 3)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

【청구항 1】 차량시트에 결합된 카시트와 상기 차량시트 사이에 결합되도록 판 형상을 가지고, 판 형상의 표면에 적어도 하나의 제1결합홀(H1)이 형성되는 결합판(110)(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상기 카시트에 착석한 아이의 발을 받칠 수 있도록 판형상을 가지고, 판 형상의 표면에 적어도 하나의 제2결합홀(H2)이 형성되는 받침판(130)(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및 기둥형상을 가지고 상기 제1결합홀(H1) 및 상기제2결합홀(H2)에 탈부착 가능하도록 결합되는 적어도 하나의 가이드바(150)를 구비하고(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 상기 제1결합홀(H1) 및 상기 제2결합홀(H2)은 관통홀이고(이하 '구성요소 4'라 한다), 상기 받침판(130)이 상기 결합판(110)보다 위에 위치하도록 상기 제1결합홀(H1)에 결합된 가이드바(150)의 상단이 상기 제2결합홀(H2)에 삽입되거나 상기 받침판(130)이 상기 결합판(110)보다 아래에 위치하도록 상기 제1결합 홀(H1)에 결합된 가이드바(150)의 하단이 상기 제2결합홀(H2)에 삽입되는 것(이하 '구성요소 5'라 한다)을 특징으로 하는 카시트용 발받침(이하,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이

라 한다).

【청구항 2 내지 8】생략

4) 발명의 개요

개 **기술분야**

[01] 본 발명은 카시트용 발받침에 관한 것으로, 특히 카시트(car seat)에 착석한 아이(영아, 유아, 어린이 등)의 다리를 지지하여 편안함과 안전성을 제공하고, 간단하게 설치가 가능한 카시트용 발받침에 관한 것이다.

대 **배경기술**

[03] 그러나, 카시트에 앉은 아이는 차량 바닥에 발이 닿지 않으므로 항상 다리가 공중에 떠 있게 되고, 이와 같은 상태로 장시간 또는 자주 이동을 하는 경우 아이가 불편함을 느낄뿐 아니라 아이의 무릎, 발목 등이 손상될 위험이 매우 높으며, 사고 발생 시 어른보다 크게 다칠 수도 있는 문제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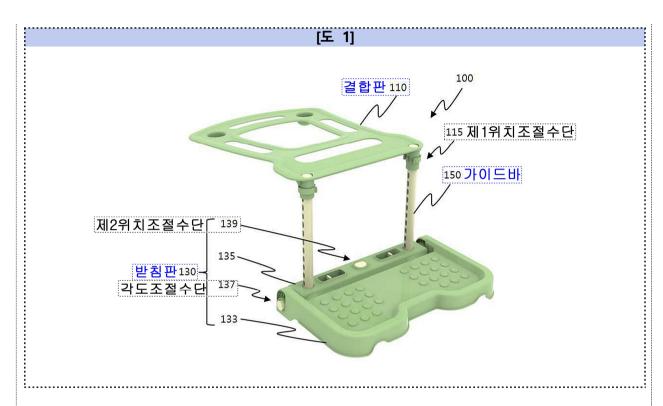
[04]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대한민국 등록특허 제10-0331007호에서는 카시트에 발판을 부착한 발명에 대하여 개시하고 있으나, 상기 등록특허에서는 <u>카시트에 발판이 내장</u>되어 있으므로 기존에 사용하던 카시트를 버리고 새로 구입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고, 아이의 체형에 맞게 발판의 높이 및 각도가 조절되지 않고 발판이 항상 고정된 위치에 있으므로 모든 연령대의 아이가 사용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

띠 해결하려는 과제

[05] 본 발명이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는 모든 종류의 카시트에 간단하게 설치할 수 있고 아이의 신체 크기에 따라 발판의 높이 또는 각도의 조절이 가능한 카시트용 발받침을 제공하는데 있다.

때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19] 도 1 및 도 2를 참조하면, 카시트용 발받침(100)은 결합판(110), 받침판(130) 및 적어도 하나의 가이드바(150)를 구비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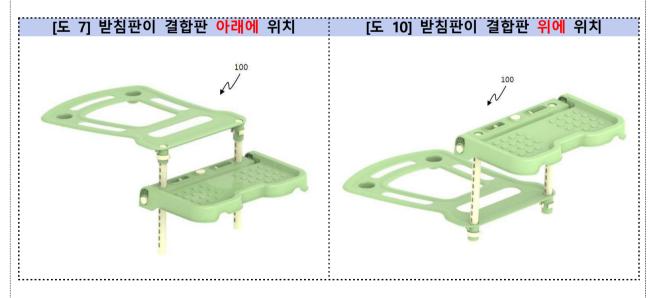


[20] 결합판(110)은 차량시트에 결합된 카시트와 상기 차량시트 사이에 결합되도록 판 형상을 가지고, 판 형상의 표면에 적어도 하나의 제1결합홀(H1)이 형성될 수 있다. 즉, 일반적으로 카시트를 차량시트에 장착하고자 하는 경우 카시트를 차량시트에 올려놓고 차량의 안전벨트로 카시트를 묶어 고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와 같이 차량시트 위에 카시트를 올려놓는 경우, 결합판(110)은 차량시트와 카시트 사이에 위치하여 고정될 수 있다. 즉, 결합판(110)을 차량시트 위에 놓고 그 위에 카시트를 놓은 후 안전벨트로 카시트를 묶어 고정시키면 카시트가 차량시트 방향으로 가하는 압력이 결합판(110)에 전달되어 카시트용 발받침(100)이 고정될 수 있다. 결합판(110)은 카시트와 차량시트 사이에 결합 고정될 수 있다면다양한 형상 및 다양한 재질로 이루어 질 수 있으며, 도 1 및 도 2의 형상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21] <u>받침판(130)은 상기 카시트에 착석한 아이의 발을 받칠 수 있도록 판 형상을 가지고,</u> 판 형상의 표면에 적어도 하나의 제2결합홀(H2)이 형성될 수 있다. 받침판(130)은 상기 카시트에 착석한 아이의 발을 지지하는 부분으로, 다양한 형상 및 다양한 재질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도 1 및 도 2의 형상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22] 가이드바(150)는 기둥형상을 가지고 제1결합홀(H1) 및 제2결합홀(H2)에 탈부착 가능하도록 결합될 수 있다. 도 1의 실시예는, 가이드바(150)의 상단 부분이 결합판(110)에 형성된 제1결합홀(H1)에 삽입되어 고정되고, 가이드바(150)의 하단 부분이 받침판(130)에 형성된 제2결합홀(H2)에 삽입되어 고정된 경우를 도시하고 있다. 다만, 본 발명이 이 경우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가이드바(150)는 제1결합홀(H1) 및 제2결합홀(H2)에 삽입 또는 분리가 가능하므로, 도 1의 실시예와 반대로 가이드바(150)의 하단 부분이 제1결합홀(H1)에 삽입되어 고정되고 가이드바(150)의 상단 부분이 제2결합홀(H2)에 삽입되어 고정됨으로써, 받침판(130)이 결합판(110)보다 위에 위치할 수도 있다(도 10 참조). 도 1 및 도 2의 실시예에서는 두개의 가이드바(150)를 각각 대응하는 제1결합홀(H1) 및 제2결합홀(H2)에 삽입하는 경우에 대하여 도시하고 있으나, 본 발명이 이 경우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다른 개수의 가이드바(150)를 제1결합홀(H1) 및 제2결합홀(H2)에 삽입하여 고정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제1결합홀(H1) 및 제2결합홀(H2)은 최소한 가이드바(150)의 개수보다는 많게 형성될 수 있다.

[42] 도 7 내지 도 12는 도 1의 카시트용 발받침(100)의 다양한 사용 상태를 도시한 도면이다.



[43] 도 1 내지 도 12를 참조하면, 카시트용 발받침(100)은 도 7의 실시예와 같이 받침판 (130)의 위치 또는 높이를 조절하여 사용할 수도 있고, 도 8의 실시예 또는 도 9의 실시예와 같이 도 7의 실시예와 동일한 위치에 결합된 받침판(130)의 각도를 조절하여 사용할 수

도 있다. 예를 들어, 카시트용 발받침(100)이 카시트와 차량시트 사이에 결합한 상태에서 아이의 발을 받칠 필요가 없거나 차량 발판 부분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 등에 도 9와 같이 받침판(130)을 사용하지 않도록 할 수도 있다.

[44] 그리고, 카시트용 발받침(100)은 도 10의 실시예와 같이 도 1의 실시예와 반대로 결합하여 사용할 수도 있다. 즉, 도 10과 같이 받침판(130)이 결합판(110)보다 위에 위치하도록 결합판(110)과 받침판(130)을 가이드바(150)에 결합하여 사용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카시트에 착석한 아이가 작아 다리가 차량 시트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경우에는 도 10과 같은 형태로 사용할 수 있다. 도 11의 실시예는 도 10의 실시예에서 받침판(130)의 위치 또는 높이를 조절한 경우에 대한 실시예이고, 도 12의 실시예는 도 11의 실시예와 동일한 위치에 결합된 받침판(130)의 각도를 조절한 경우에 대한 실시예이다.

나. 선행발명들1)

1) 선행발명 3(갑 제4호증)

2004. 4. 15. 공개된 미국공개특허공보 US2004/0070245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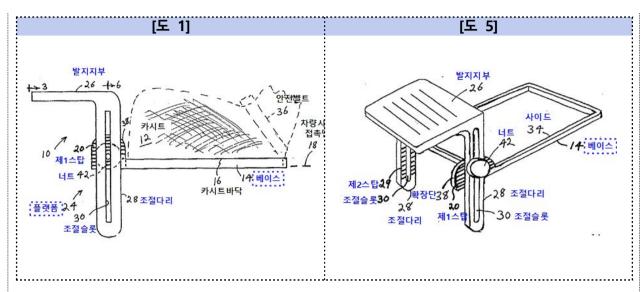
⑤ 발명의 명칭 : 발판장치

② 발명이 속하는 분야

[03] 본 발명은 여행 동안 유아 및 어린이의 편안함을 위해 카시트와 함께 사용하기 위한 독특한 발판 구조에 관한 것이다. 상기 구조는 통상적인 어린이 카시트와 협동하는 독립 디자인일 수도 있고, 상기 구조의 부분들, 예컨대, 베이스가 통상적인 카시트와 제조 시 일체를 이룰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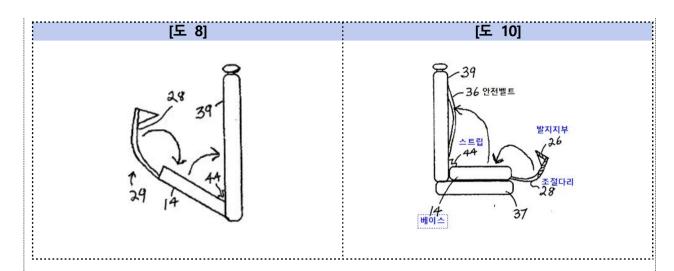
③ 발명의 상세한 설명

¹⁾ 아래에서 살펴볼 '선행발명 3 내지 6' 이외에 나머지 선행발명들에 대하여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선행발명들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18] 도면들을 참조하고 특정한 청구항들을 참조하면, 바람직한 실시예들 중 하나에서의 본 발명은 전체적으로 10번으로 표시되고, 바람직하게 PVC, 구조 낙산염, 폴리프로필렌 등의 강한 플리스틱이고, 강화 섬유 또는 폴리우레탄 등의 발포 폴리머를 포함하고, 어린이 카시트(12)를 위한 발판 구조로서, 카시트 바닥(16)의 아래에 위치하거나 제조시 카시트의 일체적 일부가 되도록 마련되고 차량 시트 접촉면(18)을 갖는 베이스(14)와, 상기 베이스의 앞 부위에 위치 한 제1스탑 또는 숄더(20)와, 발 지지부(26) 및 한 쌍의 위치 조절다리(28)를 갖되 각 위치 조절다리(28)는 조절 슬롯(30) 및 제2스탑 또는 숄더(29)를 갖고 제2스탑 또는 숄더(29)는 상기 제1스탑 또는 숄더(20)와 짝을 이루도록 마련되며 상기 발 지지부(26)는 상기 조절다리(28)에 대해 대략 직각으로 배치된 플랫폼(24)과, 32번으로 표시된 것으로서 높이 조절이 완료되면 20 및 29를 가압함으로써 상기 면(18)에 대한 상기 플랫폼의 위치를 유지시키기 위한 클램프를 포함한다.

[19] 이 <u>베이스는 카시트의 일체적 일부일 수 있고, 예컨대, 그 제조 과정에서 통상적</u>인 카시트의 바닥으로 형성될 수 있다.



[22] 기능의 동일성 의도로 어떤 구조들이 도 1 내지 7에서와 같은 도면번호로 표시된 도 8 내지 10을 참조하면, <u>다리(28)는 카펫천과 같은 휠 수 있는 천 재질로서 베이스(14)</u> 쪽으로 뒤로 쉽게 접힐 수 있고, 베이스(14)는 그 자체가 천 스트립(44) 등에 의해 카시트 또는 차량 시트의 등받이에 회전 가능하게 부착되어 상기 시트의 등받이 내 구멍과 마주하도록 또는 구멍 위로 접힐 수 있다.

2) 선행발명 4(갑 제5호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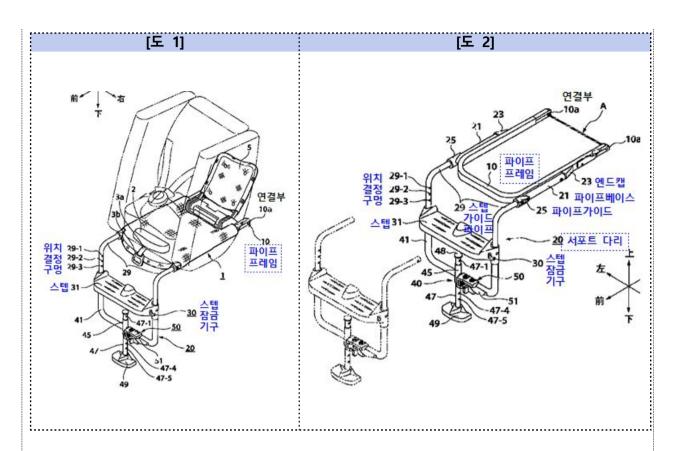
2010. 3. 5. 등록된 일본특허 제4467732호이다.

① 발명의 명칭 : 유아용 카시트용 베이스 및 유아용 카시트

② 발명이 속하는 분야

[01] 본 발명은 어린이 카시트를 차량의 좌석에 고정하기 위한 <u>카시트용 베이스</u>에 관한 것이다. 특히, <u>수납이나 운반을 편하게 할 수 있고, 높이 조정을 쉽게 할 수 있는 등의 이점</u>이 있는 어린이 카시트용 베이스에 관한 것이다.

③ 발명의 상세한 설명



[06] 본 발명은 상기 과제를 감안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수납이나 운반을 편하게 할 수 있고, 높이 조정을 쉽게 할 수 있는 카시트용 베이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 한다.

[16] 도 2 및 도 3에 나타낸 바와 같이, <u>베이스 본체(1)는 U자형 파이프 프레임 (10)을 구비</u>하고 있다. 이 파이프 프레임(10)의 양 단부 각각에는 후크 모양의 연결부(10a)가 형성되어 있다. 이 베이스를 좌석에 고정할 때 파이프 프레임(10)의 연결부(10a), 차량의 좌석 내 앵커(도 2의 부호 A)에 연결된다.

[17] 도 1 내지 도 3에 나타낸 바와 같이, <u>베이스 본체(1)의 전방에서 파이프 프레임(10)에</u>는 서포트 다리(20)가 장착되어있다. 서포트 다리(20)는 베이스 본체(1)의 정면을 자동차 바닥에 지지하는 것이다. 서포트 다리(20)는 도 2 및 도 3에 나타낸 바와 같이, 좌우 한쌍의 파이프 베이스(21)를 구비하고 있다. 좌우의 파이프 베이스(21)는 볼트(b), 너트(n)에 의해 파이프 프레임(10)의 측부에 고정되어 있다. <u>각 파이프 베이스(21)의 후단에는 엔드 캡(23)</u>

이 끼워져 있다. 각 파이프 베이스(21)의 전단에는 파이프 가이드(25)가 나사(s1)에 의해 외부 끼움 고정되는 동시에, 스텝 가이드 파이프(29)의 상단이 착탈 가능하게 연결되어있다. 스텝 가이드 파이프(29)는 L 자 모양이며, 파이프 베이스(21)의 끝에서 뻗어 나와 아래로 향하고 있다. 각 스텝 가이드 파이프(29)의 상단 내부에는 잠금 스프링(27)이 배치되어있다. [47] 다시 도 2 및 도 3에 다시 설명한다. 좌우의 스텝 가이드 파이프(29) 사이에 스텝(31)이 설치되어 있다. 스텝(31)의 양단에는 지지 슬리브(32)가 형성되어있다. 스텝(31)은 지지슬리브(32)가 스텝 가이드 파이프(29)에 외부 끼움 상태에서 상하 방향으로 슬라이딩 가능하게 되어 있다. 또한, 스텝(31)의 좌우 양단에는 스텝 잠금 기구(30)가 설치되어있다. 이 스텝 잠금 기구(30)는 스텝 가이드 파이프(29)의 각 위치 결정 구멍 (29-1~29-3)에 맞물려 스텝(31)의 높이를 다단계(이 예에서는 3단계)로 조정 가능하며, 각 단계로 스텝(31)의 높이를 잠그는 것이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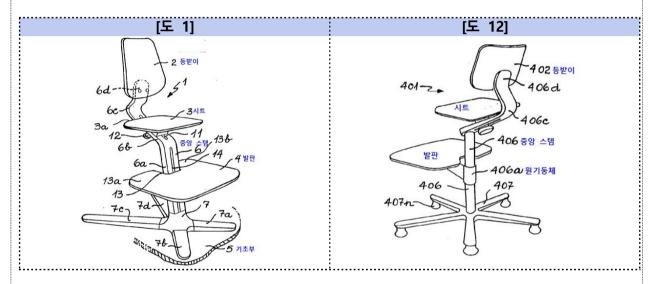
3) 선행발명 5(갑 제6호증)

1997. 6. 24. 공표된 일본공표특허공보 특표평9-506275호이다.

① 발명의 명칭 : 의자, 특히 아이용 의자의 배치

② **발명이 속하는 분야**: 본 발명은 특히 등받이, 의자 시트와 발판을 갖추어 상기 의자 시트와 발판을 의자의 기초부의 상부에서 조정 가능 높이에 설치할 수 있는 어린이용 의자에 관한 것이다.

③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에 의한 의자, 특히 인체의 크기에 적합하게 조정할 수 있는 아이용 의자의 제1의 실시예를 나타내는 도 1 및 2에 있어서, 의자 자체는 번호 1에 따라 나타난다. 의자(1)는 영구적으로 장착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영아 보호용의 설치도구 수단도 갖출 수 있는 등받이(2), 의자 시트(3) 및 발판(4)을 갖추어, 상기 의자 시트(3)와 발판(4)은 의자 기초부(5)상부의 조정 가능한 높이에 달 수 있도록 된다.

도 1 및 2에 나타난 의자에서의 제1의 특징은 중앙에 배치된 기둥 모양의 지지용 수단을 갖추는 것이며, 여기에서는 바람직하게는 1개의 중앙 스템(6)으로서 설계된 의자의 중앙면과 일치한다. 이 특수한 설계는 특히 아이 배후의 소요 공간의 감소 및 보다 간단한 조정, 특히 테이블 부근에 둘 수 있고 오르내림이 용이하여 보다 쾌적한 응용의 가능성을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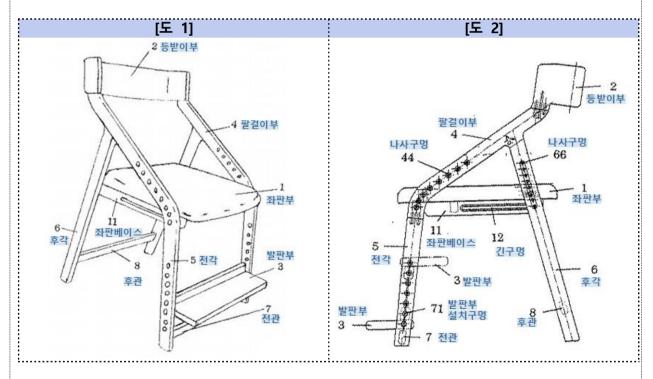
4) 선행발명 6(갑 제7호증)

2008. 9. 17. 등록된 일본등록실용신안 제3145374호이다.

① 고안의 명칭: 다이닝 체어용 학습 체어

② **고안이 속하는 분야**: 식탁의 높이에 맞출 수 있도록, 아동의 성장에 따라 좌판의 조절이 가능한 학습용 의자로서도 이용이 가능한 다이닝 체어에 관한 것이다.

③ 고안의 상세한 설명



[07] 본 고안은 이와 같이 인체공학 데이터에 기반한 최적의 다이닝 체어를 제공하기 위해 아동의 성장에 따라 용이하게 좌판이나 발판의 높이를 조절 가능할 뿐만 아니라 좌판도 전후 이동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23] 발판부(3)는 단면 L형으로 하고 있지만, 유아와 같이 키가 작은 사람이 사용할 경우에는 좌판을 상방에 올리기 때문에 좌판은 후방으로 이동한다. 따라서 발판부(3)도 상방으로 이동하게 되나, 발판부 본체가 전방에 있으면 다리가 닿지 않게 되는 일이 있다. 그래서 도 2와 같이 바닥면이 상면이 되도록 180도 회전해 고정하면 발이 닿게 된다.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 1) 원고는 2021. 1. 20.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은 선행발명 1²⁾에 의하여 위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 자'라 한다)이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특허심판원에 그 무효심판(이하, '이 사건 심판청구'라 한다)을 청구하였다.
- 2) 특허심판원은 이 사건 심판청구 사건을 2021당180호로 심리한 후, 2022. 2. 9.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은 선행발명 1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심결(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은 선행발명 3에다가 선행발명 4 내지 6³⁾을 더 고려하여 볼때, 목적의 특이성, 구성의 곤란성 및 효과의 현저성을 모두 결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의 진보성은 선행발명 3 내지 6으로 인하여 인정될 수 없다. 따라서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의 진보성 부정 여부

1) 관련 판례

발명의 진보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어도 선행기술의 범위와 내용, 진보

^{2) 2011. 6. 28.} 공고된 미국특허공보 US 7,967,387 B2에 게재된 '보조 발받침 부착물'에 관한 것이다.

³⁾ 원고는 당초 '선행발명 4, 5'만을 주장하다가, 원고의 2022. 10. 5.자 준비서면에서 '선행발명 6'을 추가하였다.

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과 선행기술의 차이 및 통상의 기술자의 기술수준에 대하여 증거 등 기록에 나타난 자료에 기하여 파악한 다음, 이를 기초로 하여 통상의 기술자 가 특허출워 당시의 기술수준에 비추어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이 선행기술과 차이가 있음에도 그러한 차이를 극복하고 선행기술로부터 그 발명을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다. 이 경우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의 명세서에 개시되어 있는 기술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사후적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그 발명 을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4 후218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청구범위에 기재된 청구항이 복수의 구성요소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이 진보성 판단 의 대상이 되는 것이지 각 구성요소가 독립하여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 므로, 그 발명의 진보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구항에 기재된 복수의 구성을 분 해한 후 각각 분해된 개별 구성요소들이 공지된 것인지 여부만을 따져서는 안 되고, 특유의 과제 해결원리에 기초하여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의 구성의 곤란성을 따 져 보아야 할 것이며, 이 때 결합된 전체 구성으로서의 발명이 갖는 특유한 효과도 함 께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여러 선행기술문헌을 인용하여 발명의 진보성이 부 정된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인용되는 기술을 조합 또는 결합하면 해당 발명에 이를 수 있다는 암시, 동기 등이 선행기술문헌에 제시되어 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해당 발명 의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 기술상식, 해당 기술분야의 기본적 과제, 발전경향, 해당 업 계의 요구 등에 비추어 보아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그와 같은 결합에 이를 수 있 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후3284 판결, 대법 원 2015. 7. 23. 선고 2013후262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과 선행발명 3의 각 구성요소별 대비

구성 요소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	선행발명 3
1	차량시트에 결합된 카시트와 상기 차량시	카시트 바닥(16)의 아래에 위치하거나 제
	트 사이에 결합되도록 판 형상을 가지고,	조시 카시트의 일체적 일부가 되도록 마
	판 형상의 표면에 적어도 하나의 제1결합	련되고 차량 시트 접촉면(18)을 갖는 베
	홀(H1)이 형성되는 결합판(110)	이스(14)
2	상기 카시트에 착석한 아이의 발을 받칠	발 지지부(26)
	수 있도록 판 형상을 가지고, 판 형상의	
	표면에 적어도 하나의 제2결합홀(H2)이	
	형성되는 받침판(130)	
3	기둥형상을 가지고 상기 제1결합홀(H1)	사이드(34) 확장단(38)과 결합하며, 발 지
	및 상기 제2결합홀(H2)에 탈부착 가능하	지부(26)와 일체를 이루는 한 쌍의 위치
	도록 결합되는 적어도 하나의 가이드바	조절다리(28)
	(150)를 구비하고,	
4	상기 제1결합홀(H1) 및 상기 제2결합홀	대응구성 없음
	(H2)은 관통홀이고,	
5	상기 받침판(130)이 상기 결합판(110)보다	
	위에 위치하도록 상기 제1결합홀(H1)에	
	결합된 가이드바(150)의 상단이 상기 제2	(38)의 결합홀에 결합되고, 위치 조절다
	결합홀(H2)에 삽입되거나 상기 받침판	리(28)의 상단이 발 지지부(26)와 일체를
	(130)이 상기 결합판(110)보다 아래에 위	이루는 것
	치하도록 상기 제1결합홀(H1)에 결합된	
	가이드바(150)의 하단이 상기 제2결합홀	
	(H2)에 삽입되는 것	

3) 공통점과 차이점

위 대비표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과 선행발명 3의 공 통점과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가) 구성요소 1 내지 4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1 내지 4는 '판 형상의 표면에 관통홀인 제1결합홀(H1)이 형성된 결합판(110),' '판 형상의 표면에 관통홀인 제2결합홀(H2)이 형성된 받침판(130)', '제1결합홀(H1) 및 제2결합홀(H2)에 탈부착이 가능하도록 결합되는 가이드바(150)'로서, 선행발명 3의 '베이스(14)', '발 지지부(26)', '위치 조절다리(28)'와 대응되고, 카시트와 차량시트 사이에 발받침을 고정하기 위한 구성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다만,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은 결합판(110) 및 받침판(130) 표면에 관통홀인 결합홀(H1, H2)이 형성되어 탈부착이 가능하게 가이드바(150)와 결합하는 반면, 선행발명 3은 사이드(34)의 확장단(38)에 너트(42) 결합을 위한 홀이 형성되어 있으나 베이스(14)의 표면이 아닌 측면에 형성되어 있고, 발 지지부(26)는 조절다리(28)와 일체로 되어 있어 결합을 위한 홀이 없으므로,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과 선행발명 3은 구성 및 그결합방식에서 차이가 있다(이하, '차이점 1'이라 한다).

나) 구성요소 5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5는 결합판(110)의 제1결합홀(H1) 및 받침판 (130)의 제2결합홀(H2)과 가이드바(150)의 결합방법에 따라 받침판(130)이 결합판(110)의 상부 또는 하부에 위치할 수 있는 것인데 반해, 선행발명 3은 위치 조절다리(28)의상단이 발 지지부(26)와 일체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발 지지부(26)가 차량시트 접촉면 (18)보다 아래에 있을 수 있는 구성이 없다는 차이가 있다(이하, '차이점 2'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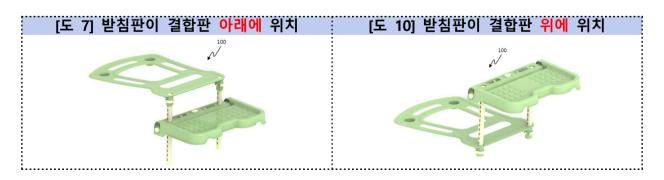
4) 차이점들에 대한 검토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해 볼 때, 위와 같은 차이점들은 통상의 기술자가 원고 주장의 선행발명들에 의해 쉽게 극복할 수 없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이법원에서 제출한 증거들과 그 주장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그와 달리 볼 수는 없다.

가) 기술적 특징

차이점 1은,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에는 결합판(110) 및 받침판(130) 표면에 관통홀인 결합홀(H1, H2)이 형성되어 있어 가이드바(150)와 탈부착이 가능하게 결합된 구성인데, 이는 선행발명 3의 홀의 위치와 유무, 일체로 형성된 발 지지부(26)와 조절다리(28)와는 차이가 있다. 또한, 차이점 2는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은 받침판(130)이 결합판(110)의 상부 또는 하부에 위치할 수 있지만 선행발명 3은 발 지지부(26)가 차량시트 접촉면(18)보다 아래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결국,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의 구성요소와 그에 대응되는 선행발명 3의 구성요소의 차이 및 그로 인한 구성요소 사이의 유기적 결합관계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 이사건 제1항 특허발명은 아이의 신체 크기에 따라 받침판을 결합판 위 또는 아래의 높이로 조절이 가능하다는 것을 그 기술적 특징으로 한다고 볼 수 있다.



이 사건 특허발명

[05] 본 발명이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는 모든 종류의 카시트에 간단하게 설치할 수 있고 아이의 신체 크기에 따라 발판의 높이 또는 각도의 조절이 가능한 카시트용 발받침을 제공하는데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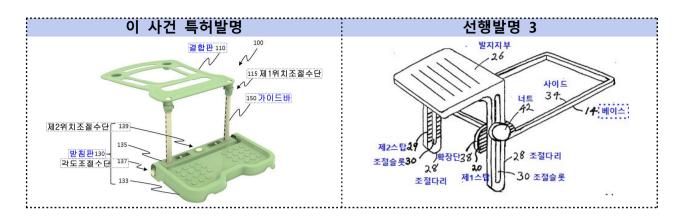
[43] 도 1 내지 도 12를 참조하면, 카시트용 발받침(100)은 도 7의 실시예와 같이 받침판 (130)의 위치 또는 높이를 조절하여 사용할 수도 있고,

[44] 그리고, 카시트용 발받침(100)은 도 10의 실시예와 같이 도 1의 실시예와 반대로 결합하여 사용할 수도 있다. 즉, 도 10과 같이 받침판(130)이 결합판(110)보다 위에 위치하도록 결합판(110)과 받침판(130)을 가이드바(150)에 결합하여 사용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카시트에 착석한 아이가 작아 다리가 차량 시트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경우에는 도 10과 같은 형태로 사용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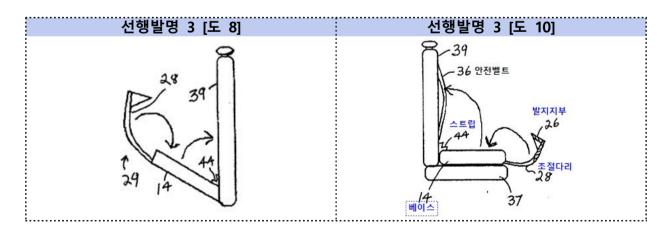
나) 구체적 검토

①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은 결합판(110) 및 받침판(130)의 표면에 관통홀인 결합홀(H1, H2)이 형성되어 가이드바(150)와 탈부착이 가능하게 결합된 구성으로, 이러한 구성요소간 유기적 결합관계로 인해 아이의 신체 크기에 따라 받침판을 결합판 위 또는 아래의 높이로 조절이 가능하다. 이에 반해, 선행발명 3은 사이드(34)의 확장단(38)에 너트(42) 결합을 위한 홀이 형성되어 있으나 베이스(14)의 표면이 아닌 측면에 형성되어 있고, 발 지지부(26)는 조절다리(28)와 일체로 되어 있어 결합을 위한 홀이 없는 구성으로, 그 특성상 발 지지부(26)가 차량시트 접촉면(18)보다 아래에 있을 수 없을뿐만 아니라, 아이의 신체 크기에 따라 받침판을 결합판 위 또는 아래의 높이로 조절하는 것에 대한 개시나 암시도 없다.

[도면 삽입을 위한 여백]



② 이에 대해 원고는, '선행발명 3은 위치 조절다리(28)를 휠 수 있는 재질로 사용하여 발 지지부(26)를 베이스(14)의 아래에 위치시킨 변형예를 제시하고 있고, 선행발명 4의 스텝 가이드 파이프(29), 베이스 본체(1), 스텝(31)이 각각 선행발명 3의 위치조절다리(28), 베이스(14), 발 지지부(26)에 대응되며, 스텝(31)을 베이스 본체(1)의 아래에 위치시키면서 휠 수 없는 스텝 가이드 파이프(29)에 결합시키는 선행발명 4를 선행발명 3의 변형예에 적용하면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5를 도출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의 기재와 같은 선행발명 3의 명세서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주장과 같이 선행발명 3의 조절다리(28)를 휠 수 있는 재질로 사용하여 발 지지부(26)를 베이스(14)의 아래에 위치시킨 변형예는 조절다리(28)를 베이스(14) 쪽으로 접

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 발 지지부(26)를 베이스(14)의 위 또는 아래에 위치시켜 발반 침으로 하기 위한 구성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변형예로 인하여 선행 발명 3의 구성에 선행발명 4를 결합시켜 받침판을 결합판의 위 또는 아래의 높이로 조절한다는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의 기술적 특징을 도출할 수 있다.'라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선행발명 3

[22] 기능의 동일성 의도로 어떤 구조들이 도 1 내지 7에서와 같은 도면번호로 표시된 도 8 내지 10을 참조하면, 다리(28)는 카펫천과 같은 휠 수 있는 천 재질로서 베이스(14) 쪽으로 뒤로 쉽게 접힐 수 있고, 베이스(14)는 그 자체가 천 스트립(44) 등에 의해 카시트 또는 차량 시트의 등받이에 회전 가능하게 부착되어 상기 시트의 등받이 내 구멍과 마주하도록 또는 구멍 위로 접힐 수 있다.

나아가, 선행발명 4의 명세서에 의할 때, 선행발명 4의 스텝(31)도 파이프프레임 (10) 아래에 위치할 뿐, 그 구성상 스텝(31)이 파이프프레임(10) 위에 위치하는 것이 제한되어 있음이 명백하다. 결국, 받침판을 결합판의 위나 아래의 높이로 조절하는 것에 대한 개시나 암시가 없는 '선행발명 3과 4를 결합해서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5를 도출할 수 있다.'라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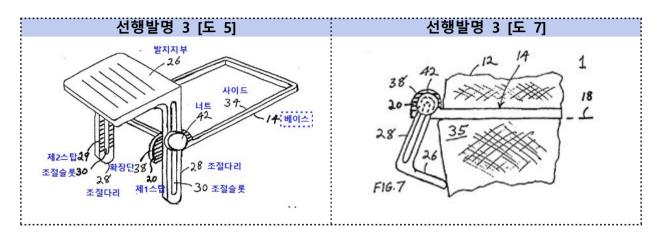
③ 원고는, '선행발명 5에 "발판(404)이 원주체(406a)에 의해 중앙 스템(406)을 따라 그 높이가 조정될 수도 있다"는 것이 개시되어 있고, 이는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에서 결합판(110)이 제1결합홀(H1)에 의해 가이드바(150)를 따라 그 높이가 조절되는 것에 해당하므로, 선행발명 3에서 베이스(14)에 대한 위치 조절다리(28)의 상하 이동및 분리 허용을 위해 베이스(14)에 위치 조절다리(28)가 관통하는 관통홀을 두어 차이점 1을 극복하는 것은 선행발명 3 및 5로부터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선행발명 5는 어린이용 의자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 특허발명인 카시트 발판과는 그 기술분야가 상이하다. 설령. 선행발명 5의 발판(404)을 이 사건 제1항 특 허발명의 받침판(130)과 대응시켜 보더라도, 앞서 본 선행발명 5의 명세서 내용 등을 감안하면, 선행발명 5의 발판(404)은 등받이(402), 시트(3) 등과 일체로 구성되어 있어, 발판(404)만을 분리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과 아울러 선행발명 5의 발판(404)은 시트 (3)와 기초부(5) 사이에서만 높이 조절이 가능하고. 시트(3) 위쪽으로의 이동은 제한되 어 있다고 보인다. 또한, 위와 같은 선행발명 5의 원주체(406a) 및 중앙 스템(406)의 구성을 선행발명 3에 적용하려면, 일단 선행발명 3의 발 지지부(26)와 조절다리(28)를 분리시켜야 한다. 그와 함께, 세워져 있는 형상에 측면으로 나사 홀이 있는 확장단(38) 의 형상을, 가로로 눕혀져 있고 원주형상의 평면상 홀로 변경해야 하고, 조절다리(28) 도 원기둥 형상으로 변경해야 하는 등 상당한 설계변경이 필요하다. 하지만, 선행발명 3이나 5에는 위와 같은 상당한 설계변경의 가능성을 시사 또는 암시하고 있지 않다. 설령, 위와 같은 상당한 설계변경을 통해 원고가 주장하는 결합을 하더라도,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의 구성요소간 유기적 결합관계를 통하여 아이의 신체 크기에 따라 받 침판을 결합판 위 또는 아래의 높이로 조절하는 것을 달성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다 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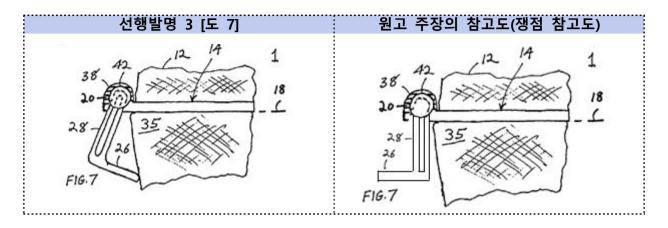
④ 원고는, '선행발명 3에는 "도 1 및 도 5와 같이 발 지지부(26)를 베이스(14)보다 위에 위치시켜 영유아의 다리를 편안하게 지지할 수도 있고, 도 8 내지 10과 같이 발 지지부(26)를 베이스(14)보다 아래에 위치시켜 영유아에 비해 다리가 긴 어린이의다리를 편안하게 지지할 수도 있으며, 이때 도 1 및 도 5의 발 지지부(26)를 도 8 내

지 10과 같이 베이스(14)보다 아래에 위치시키는 것도 고려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알수 있을 만한 통상의 기술자의 기술수준이 나타나 있는 것이다.'라는 취지의 주장도 한다.



살피건대, 선행발명 3의 도 7은 플랫폼(24)이 다리가 긴 어린이들을 수용하기 위해 아래 위치로 회전한 것으로, 발 지지부(26)가 발을 지지하는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이며, 선행발명 3의 도 8 내지 10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조절다리(28)를 베이스 쪽으로 접기 위한 것으로, 역시 발 지지부(26)가 발을 지지하는 역할과는 차이가 있다. 또한, 갑 제4호증의 기재로 인정할 수 있는 선행발명 3의 청구항 제1항에 개시된 '발 지지부(26)가 다리(28)에 대해 직각으로 누워있고, 다리(28)가 베이스(14)보다 아래로 연장할 때 발 지지부(26)가 어린이의 발을 편안하게 지지하는 위치에 있게 된다'라는 내용은, 그 구체적인 문언 등에 비추어 볼 때, "조절다리(28)"가 베이스(14)보다 아래로 연장된다는 것에 그 기술적 의미가 있어 보인다. 따라서 그와 다른 전체에 기초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한편, 앞서 살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주장의 사정들만으로는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3 내지 4로부터 아래와 같은 원고 주장의 참고도(이하 '쟁점 참고도'라 한다)로 제시한 "플랫폼 반전 자세"를 쉽게 착안할 수 있

다고 볼 수도 없다].



⑤ 또한 원고는, '선행발명 6에는 키가 큰 어린이와 키가 작은 영유아의 발을 모두 지지하기 위해 발판부(13)를 "L"자와 180° 뒤집어 사용하는 방법이 모두 개시되어 있는데, 선행발명 3에 관한 "플랫폼 반전 자세(쟁점 참고도)"를 사용하여 차이점 2를 극복하는 것은 선행발명 6에 나타난 기술수준 등에 비추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취지의 주장도 한다.

그러나 선행발명 6은 아이용 의자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 특허발명인 카시트 발판과는 그 기술분야가 상이하다. 나아가, 선행발명 6은 발판부(3)가 좌판부(1) 아래에서 만 위치 조절이 가능하고, 좌판부(1) 아래에서 필요에 따라 발판부(3)를 180° 뒤집어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그와 함께, 원고 주장의 쟁점 참고도는 선행발명 3에서 시사또는 암시가 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데, 선행발명 6에 좌판부(1) 아래에서 발판부(3)를 "L"자와 180° 뒤집어 사용하는 방법이 개시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제1항특허발명과 같이 받침판(130)을 결합판(110)의 위·아래로 설치 가능한 것과 선행발명 3의 베이스(14) 상단에만 위치하는 발 지지부(26)의 차이를 극복하는 것이 용이하다고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 등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해 보면,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또한, 위에서 살펴본 내용에다가 선행발명 6의 기술분야와 그 내용 등을 감안해 볼 때, '차이점 1은 선행발명 3, 6 및 선행발명 4로부터 쉽게 극복될 수 있다.'라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 다).

다) 검토 결과의 정리

위에서 검토한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은 선행발명 3 내지 6으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그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나. 소결

앞서 살핀 바에 따르면,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은 원고 주장의 선행발명 3 내지 6으로부터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 결국, 그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심결에는 원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우성엽

판사 임영우

판사 김동규